

『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명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외교행정, 통·번역 국제교류 및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- 외국어 및 국제협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, 대외협력 역량 강화 및 교류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◆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활한 소통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,

○ 검토 결과,

- ◆ 기존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전문가 위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였음.
- ◆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협약(2025. 9. 20.) 체결에 따라 2026년부터 공식 상호방문이 추진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양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행정, 통·번역, 국제교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